

교지 『서강』 편집위원회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이 편집위원회는 “서강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”라고 부른다.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

제2조(목적)

이 위원회는 학내외의 현상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분석하여 교지 『서강』을 간행해 서강공동체에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활동근거) <교내 학칙 확인>

제4조(사업)

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단위는 ‘회기’라 칭한다.

이때 회기는 각각 여름호 또는 겨울호가 발간되는 매년 3월부터 8월,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6개월을 일컫는다.

- 1) 서강대학교 학내외의 현상 취재, 분석
- 2) 원고 작성 및 편집
- 3) 서강대학교 청년문학상 개최
- 4) 교지 『서강』 발행
- 5)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제5조(소재지)

1. 이 위원회의 편집실은 서강대학교 교내에 둔다.
2. 필요할 경우 교외에 활동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광고방식)

이 위원회의 각종 광고는 결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필요한 경우 다른 학내 언론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2장 구성

제7조(구성)

위원회는 편집장, 부편집장, 총무, 정편집위원으로 이룬다.

제8조(편집장)

1. 이 위원회의 편집장의 임기는 한 회기이며, 재임이 가능하다.
2. 편집장은 총 회의에서 선출된다.
3. 편집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 - 1) 교지를 대표한다.
 - 2) 회의를 주관한다.
 - 3) 교지 『서강』 발행권을 가진다.
- 4)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2. 8. 11.>
행정업무 시 연락을 해야 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.
 - (1) 학생지원팀 학내언론사 담당 간사
 - (2) 학내언론사 주간교수
 - (3) 학내언론사 언론사협의체
 - (a) 언론사협의체 정기회의
 - (b)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참관
 - (c) 단, 부득이한 경우 타 구성원이 대리할 수 있다.
- 5) 교지 『서강』의 콘텐츠를 총괄한다.

제9조(부편집장)

1. 이 위원회의 부편집장의 임기는 한 회기이며, 재임이 가능하다.
2. 부편집장은 총 회의에서 선출된다.
3. 부편집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 - 1) 편집장 부재 시 편집장의 권한을 대신한다.
 - 2) 모든 회의의 서기를 담당한다.
 - 3) 대외 연락을 담당한다. <개정 2022. 8. 11.>
대외 연락을 해야 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.
 - (1) 청년문학상 심사위원 및 지원자
 - (2) 출판대행사 및 광고기획사
 - (3) 표지 디자이너
 - (4) 외부 필진

제10조(총무)

1. 이 위원회의 총무의 임기는 한 회기이며, 재임이 가능하다.
2. 총무는 총회의에서 선출된다.
3. 총무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 8. 11.>

- 1) 예산 운영 및 관리
 - (1) 연간 예결산안 제출
 - (2) 모든 지출 시, 지출 직후 지출증빙 기록
 - (3) 매월 말 학생지원팀 학내언론사 담당 간사에게 지출증빙 제출
- 2) 예결산 현황 공유
 - (1) 매 회의 시 모든 구성원에 지출 보고 및 지출 계획 공지
 - (2) 신입 정편집위원 예산안 교육
- 3) 언론사 지원금 외 교지 회비 등 관리

교지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 - (1)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한 공금
 - (2) 교지 단위로 발생한 수입

제11조(정편집위원)

1. 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정편집위원이라 한다.
2. 정편집위원은 위원회와 학교가 제공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. <개정 2022. 8. 11.>
8. 11.>
 - (1) 학내 언론사에 편성된 하비에르 장학금
 - (2) 교지에 편성된 근로장학금
3. 정편집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의결할 권리가 있다.
4. 정편집위원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5. 한 달에 두 번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임원과 함께 제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.

제12조(선출과 임명)

1. 편집장, 부편집장, 총무(이하 '임원'이라 한다)는 총회의에서 선출한다.
 - 1) 임원 선출은 직접, 비밀투표로 한다.
 - 2) 재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.
2. 정편집위원은 회칙 제3장에 따라 선발한다.

제13조(활동기간) <개정 2022. 8. 11.>

1. 모든 정편집위원은 최소 두 회기를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정편집위원의 최대 활동기한은 따로 없으며, 활동 기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직하거나 퇴직할 수 있다.
3. 모든 정편집위원은 회기말 총회의에서 휴/복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, 회기 단위로 휴직이 가능하다.

- 1) 휴직 시 교지 정편집위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제한된다. 여기서 혜택이라 함은 제11조 2항에 한한다.
- 2) 휴직 조건은 최소 두 회기 이상 활동한 정편집위원에 한한다.
- 3) 휴직 시 정기회의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, 총회의에는 참여해야 한다.

제14조(비상대책위원회)

1. 편집장의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'비대위')를 구성한다.
2. 비대위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총회의에서 인준한다.
단, 비대위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남은 인원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추가모집을 한다.
3. 비대위는 새 임원진 구성을 목표로 하며, 임원진 구성 전까지 편집장의 업무를 분할 담당한다.

제3장 정편집위원 선발

제15조(지원자격)

서강대학교 학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공개모집 기간에 지원 가능하다.

제16조(선발 결정) <개정 2022. 8. 11.>

1. 선발은 정편집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, 총회의를 통해 인준한다.
단, 총회의에서 정규선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규선발은 건너뛴 수 있다.
2. 정규선발기간은 매년 3월(필요시 9월)의 둘째주를 넘기지 않는다.
3. 교지 정편집위원은 최대 12명이며,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.

제17조(모집) <개정 2022. 8. 11.>

정편집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.

1. 공개모집을 시작하는 시기와 일정은 공개모집 시마다 정하되 정규학기 개강 후 한 달 이내에 발표한다.
2. 공개모집 관련 사안은 총회의에서 의결한다.

제4장 회의

제18조(회의)

본 위원회는 정편집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를 진행한다.

제19조(회의의 기능)

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- 1)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

- 2)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
- 3) 교지 발간을 위한 원고 개발과 편집

제20조(회의의 종류) <개정 2022. 8. 11.>

회의는 기획편집회의, 실무회의, 평가회의로 나뉜다.

1. 기획편집회의는 기획과 편집 관련 사안을 다룬다. 이는 매 주 소집하며, 일시는 매 회기 총회의를 통해 정한다.
2. 실무회의는 행정업무 관련 사안을 다룬다. 이는 매 주 소집한다. 일시는 매 회기 총회의를 통해 정한다.
3. 평가회의에서는 『교지서강』 매 호 발행 직후 교지를 평가한다. 이는 매 호 발행시 소집한다. 일시는 실물발행 직후 정편집위원의 협의로 정한다.

제21조(회의록) <개정 2022. 8. 11.>

회의록은 매 회의에서 서기가 작성하며, 정편집위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 공유한다.

단, 회의록은 모두가 열람 가능하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, 해당 업무는 3일 이내에 서기가 공개한다.

제5장 총회의

제22조(권한)

총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
- 1) 임원 선출 및 탄핵, 비대위 인준
- 2) 신입 정편집위원 인준 및 제명
- 3) 회칙 개정
- 4) 그 외 『교지서강』의 활동 방향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

제23조(소집 및 의결)

- 1) 총회의는 편집장의 요청, 혹은 정편집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며, 정편집위원 2/3 이상의 참석으로 성사된다.
- 2) 재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- 3) 임원 선출에 한해서는 정편집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- 4) 단, 임원 탄핵에 한해서는 구성원 전원이 의사를 밝혀야 하며, 정편집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24조(총회의록)

총회의록 관련 세칙은 제21조를 참조한다.

제6장 기타

제25조(개인정보 사용 및 처리 방침) <개정 2022. 8. 11.>

1. 외부인의 개인정보는 인건비 등의 지급 확인 직후 파기한다.
 - 1) 개인정보란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, 연락처, 소속 및 직책을 일컫는다.
 - 2) 입금 확인 및 개인정보 파기는 해당 회기를 넘기지 않는다. 회기를 넘길 경우 입금 확인 여부와 상관 없이 파기한다.
2. 정편집위원의 개인정보는 퇴기 직후 파기한다.
 - 1) 단, 임원진의 연락처에 한하여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보관한다.

제26조(징계)

필요 시 교지 내 사건처리의 권한을 관련 학내자치기구로 인계한다.

제27조(회칙 개정)

본 위원회의 회칙은 총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28조(준용)

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, 정편집위원의 결의 및 언론사협의체의 내규에 따른다.

제28조(적용)

이 회칙은 2019.03.19.부터 적용한다.

(수정) 2022.08.11.